

지원 서비스 요청

DCSS 0055 (Korean) (10/20/2019)

CSE 사례 번호:

지침: 아래에 서명하기 전에 주의 깊게 읽어보세요. 저희가 귀하의 사례를 개설하려면 서명이 필요합니다.

2020년 10월 1일부터 2018년 초당적 예산법, 2005년 연방 적자 감축법 조항을 수정한 공법 115-123의 53117 항에 따라 아동양육비서비스국은 공공 지원을 받은 적이 없는 각 사례에 대해 연간 35달러의 서비스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 수수료는 매년 10월 1일에 부과되며, 이전 연방 회계연도(10월 1일~9월 30일) 동안 가족에게 최소 550달러가 지급된 각 사례에 해당됩니다. 이 수수료는 10월 1일 이후 양육 당사자에게 지급되는 다음 지급금에서 자동으로 공제되며, 전액 회수될 때까지 계속 공제됩니다.

지역 자녀 양육비 기관이 자녀의 친권을 확정하기 위한 양육비 지급 명령을 받거나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양육비 명령을 집행하는 데 도움을 받기를 원합니다.

본인은 사회보장법 타이틀 IV-D에 따른 아동 양육비 서비스 프로그램을 통해 이러한 서비스를 신청한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본인은 다음과 같은 경우 양육비 기관에 즉시 알리겠습니다:

- 각 자녀가 결혼할 경우.
- 각 자녀가 만 18세가 되어 더 이상 고등학교에 다니지 않거나 만 19세 되었을 경우 중 먼저 해당하는 경우.
- 본인의 집 주소, 우편 주소 또는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포함하여 본인의 고용주가 변경된 경우.
- 수입이 변경된 경우.
- 본인의 건강 보험 보장 상태, 비용 또는 여부가 변경되는 경우.
- 다른 부모의 소재에 관한 정보가 변경된 경우.
- 부모가 자녀와 함께 다시 동거하게 된 경우, 또는
- 양육권, 보육 또는 방문권에 변경이 있는 경우.

본인은 지역 양육비 기관이 본인, 다른부모 또는 이 사례와 관련된 자녀를 대리하지 않음을 알고 있습니다.
지역 양육비 지원 기관과 본인, 다른 부모 또는 자녀들 사이에는 변호사-의뢰인 관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역 양육비 관이 본인이 요청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변호사-고객 의뢰인 성립되지지 않습니다.

본인은 캘리포니아주 법률에 따라 위증 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조건 하에 위에 명시된 모든 조건을 읽고 이해했으며 이에 동의함을 선언합니다.

정자체 이름

서명

날짜